동작구의회공고 제2016-4호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의회 회의규칙」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> 2016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

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제54조 정례회 집회일의 개정 및 우리구 행정사무감사가 제2차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일을 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10일로 개정(안 제4조제1호)
- 나.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15일로 개정(안 제4조제2호)
- 다. 제1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삭제(안 제5조제1항)
- 라. 제2차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추가(안 제5조제2항)

## 3. 의견제출
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(주소 :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(노량진동47-2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 (전화 : 820-1323, FAX 817-3184, E-mail : jisookc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 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  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4조제1호에 "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."를 "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10일에 집회한다."로 한다.
- 제4조제2호에 "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25일에 집회한다."를 "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11월15일에 집회한다."로 한다.
- 제5조제1항에 "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"을 "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"으로 한다.
- 제5조제2항에 "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"을 "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<u>신·구조문 대비표</u>

,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	71) 7-J 0-L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정례회 집회일) (생략)	<b>제4조(정례회 집회일)</b> (현행과 같음)
1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<u>6월20일</u> 에	1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<u>6<b>월10일</b></u> 에
집회한다.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	집회한다.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
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	제1차 정례회는 구의회의 의결로
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	9월·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<u>11월 25일</u> 에	2.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<u>1<b>1월 15일</b></u> 에
집회한다.	집회한다.
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	제5조(심의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
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	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 그 밖에
실시와 법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 및	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·의결
그 밖에 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	한다.
심의·의결한다.	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<b>법 제41조제1항에</b>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에 따른	<u>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</u> 법 제127조에
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 구의회	따른 다음연도 예산안 및 그 밖에
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	구의회 회의에 올린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